

이 자료는 자치경찰제 관련 최근 이슈에 대하여, 자치분권위원회
· 행정안전부 · 경찰청에서 공동 작성한 Q&A 자료입니다.

자치경찰제 10문 10답

'19. 6. 10.



차 례

1.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 및 도입 이유

- 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1
- ①-1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은? 3
- ②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 향후 계획은? 5
- ③ 주민 입장에서 좋아지는 점은? 6

2.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

- ④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된 자치경찰제 안은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닌지? 7
- ⑤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이나, 상호 업무 떠넘기기로 인해 주민들이 더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지? 9
- ⑥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 공백이 발생하거나, 치안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10
- ⑦ 지역 세력과 유착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는 없는지? ... 11
- ⑧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닌지? 13
- ⑨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치안불균형은 없는지? ... 14
- ⑩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15

Q 1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A

- 그동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서비스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전환
- 중앙에서 운영하던 민생치안사무 및 담당 인력의 절반 이상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제고

- ① 그동안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 · 분권성 ·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현행 국가경찰 체계로는 복잡·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거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자치경찰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제도 도입이 최초로 명문화되었습니다.
 - * 우리나라 최초 자치경찰제는 '07.3.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었으며, 출범 당시 38명이던 자치 경찰은 현재 411명(국가 경찰 260명 파견)으로 증가
 - ** 제10조 제3항(現 지방분권법 제12조 제3항) :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추진 중입니다.
- ②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단체의 권한·책임 하에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히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중앙집권화된 경찰력을 분산해 민주성을 높임으로써,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아울러,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국가경찰은 전국적 규모의 치안활동이나 범죄수사에 중점을 둘 수 있어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전문성·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 ③ 현재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범위와 사무는 다르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뿐 아니라,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대륙법계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시행

..... <보조자료>

▶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방안

구분	1단계 (일부지역+일부사무)	2단계 (전국+일부사무)	3단계 (전국+전체사무)	최종단계
대상 지역	5개 지역* (서울·세종·제주 외 2개 시도) *추가 확대방안 검토	전국	전국	전국
사무	자치경찰 사무 약50% (일부 수사권 포함)	자치경찰 사무 약70~80% (일부 수사권 포함)	자치경찰 사무 100%	평가 후 추가 확대
인력	7,000~8,000명	30,000~35,000명	43,000명	
시점	2019년* *’18.11월 도입방안 기준 / 경찰법 통과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시범운영 돌입 (국회상황에 따라 유동적)	2021년	2022년	정착수준에 맞춰 평가 후 판단

▶ 자치경찰 주요 해외사례

구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도입단위	기초	광역·기초	광역·기초	광역·기초	광역	광역	광역
자치경찰 사무	범죄예방, 질서유지, 공중위생 등	범죄예방, 교통단속, 시설보호, 질서유지 등	범죄예방, 환경, 교통, 재난구호 등	주(州)별로 상이	모든 경찰사무	모든 경찰사무	모든 경찰사무
자치경찰 수사권	사법경찰 보조	사법경찰 보조	사법경찰 보조	독자적 수사권	독자적 수사권	독자적 수사권	독자적 수사권
국가경찰	국립경찰 군인경찰	국립경찰 군인경찰	국립경찰 군인경찰 재무경찰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등	SOCA(중대조 직범죄청)	연방경찰청· 연방범죄수사청 (BKA)	경찰청
국가경찰 지도감독	· 조정협약에 의한 개입 · 내무부장관, 경찰청 감사권	조정협약에 의한 개입	· 조정협약에 의한 개입 · 국가경찰의 요청 시	지휘·통제 아닌 협조관계	내무부장관 지휘·감독권 인정	긴급사태 발생 시	경찰청 소속 관구경찰국의 지휘·감독
예산	자치단체 부담	자치단체 부담	자치단체 부담	자치단체 부담	국고보조 1/2	각 주별 자체 부담	자치단체 부담, 일부 국가지원

Q1-1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은?

A

- 국가경찰 중 약 4만 3천명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관하여, 자치경찰 신설
-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수행 /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범죄수사 등 전국적 사무 수행

- ①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대부분 자치경찰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 국가경찰은 1단계 7~8천명 → 2단계 3~3.5만명(누적기준) → 3단계 4.3만명(누적기준)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하게 됩니다.
- ② 시·도지사에게는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분권의 기본 취지를 구현하였습니다.
 - 다만,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하게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③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연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수사권·초동조치권 부여 등 실효성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 ① 성·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민생치안 수사권 부여
② 현장보존 등 초동조치권 부여 ③ 국가경찰에 적용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면 준용 등

..... <보조자료>

▶ 자치경찰 및 국가경찰 사무배분(案)

구분	자치경찰	국가경찰
주요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지구대·파출소 민생치안 밀접 수사(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안·외사·경비 및 112상황실 수사(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형사 등)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협약으로 규정) 및 순찰대

▶ 도입방안 종합설계도



△ 조직·인력 :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증원 없이, 필요한 인력은 지역경찰·교통 등 국가경찰 ‘총 4만 3천명’ 수준을 ‘단계적’으로 이관, 자치경찰 신설(이원화 모형)

※ 1단계 7~8,000명 → 2단계 30,000~35,000명 → 3단계 43,000명 → 최종단계 평가 후 추가 확대

- 지역 밀착 부서인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 이관

△ 정치적 중립 :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 사무배분 :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수행

※ 112신고 출동 및 현장 초동조치는 공동 대응, 업무혼선 및 국민불편 최소화

-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건현장에 대한 현장보존 등 ‘초동조치권’ 부여

△ 재정소요 : 초기 시행단계는 국가부담, 전국 확대 시 별도 재정지원 방안 강구

※ △신규 증원 없이 국가경찰 인력 이관 △시설·장비 등 공동 활용, 신규 재정부담 최소화

Q 2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 향후 계획은?

A

- 자치경찰제 법안의 연내 입법화 목표
- 시범운영 지역 선정(올해 하반기內) 및 운영준비, 법안 통과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시범운영 돌입

① 자치경찰 법제화를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19.3.11,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되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국민·국회의원·현장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도입의 필요성,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며 공감대 확산에 주력중입니다.

② 시범운영 관련, 올해 5월 경찰청 소속으로 '시범운영 지역선정 및 평가 위원회(9명)*'가 출범하여, 시범운영 지역 선정 절차를 착수하였습니다.

* 위원 추천 : 자치분권위, 행안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 평가기준 확정, 지자체 설명회 및 공모, 평가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까지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국회 법안 논의 경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이후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경찰법 통과 후 6개월 경과시점부터 실제 시범운영에 돌입하게 됩니다.

- 한편, 시범운영에 대한 시·도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지난 당정청 협의(5.20)에서 결정하였습니다.

Q 3

주민 입장에서 좋아지는 점은?

A

-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 교통·방범시설 개선 등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의 결합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
-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 활성화

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의 완성도와 지방행정의 종합행정력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 또한, 자치단체 소속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됩니다.

①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죠폐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③ 관광지·신도시·농어촌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 관광지에서는 기마경찰대 등으로 일반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순찰하면서 질서유지나 관람객 안전 보호

** 외국인 거주가 많은 도시의 경우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농촌지역에서는 농산물 절도 등 범죄 대응에 중점

② 무엇보다도,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개진, 요구사항 반영 등도 활성화 되어, 주민들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4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된 자치경찰제 안은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닌지?

A

- 국가경찰 인력의 36%인 4.3만명을 자치경찰로 이관,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과 치안 여건, 국민의 편익 등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

잘못 알려진 내용

- 범정부적으로 확정된 자치경찰제 안은 실효적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경찰조직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을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수사권을 일부 사무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경찰사무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1] 경찰청·검찰청·법무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우리 치안여건, 국민들의 편익,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실효성이 높은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 특위, 법제 TF·특위 등을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 일원화 모형(지방청 이하 모든 조직 이관), 이원화 모형(지구대·파출소 등 일선조직 위주 이관) 등
 - 일부에서는 지역 권력과의 유착 우려 등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연방제 수준으로 자치경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지방경찰청·경찰서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모형'까지 검토하였으나, 치안력 약화·훼손 등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19.2.14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된 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여러 가지 대안 중 ①경찰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②치안력 약화 및 불균형 방지, ③치안혼란 등 주민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과 치안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범정부안에 따르면, 전체 국가경찰 인력(11만 7,617명, '18.11월 기준)의 약 36%인 4.3만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핵심인 민생치안 사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 자치경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활동(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과 관련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초동조치권도 부여되어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 성·가정·학교폭력의 44%, 교통사고 조사의 약 88% 수준임

○ 다만, 마약범죄, 강·폭력범죄, 과학·첨단수사 등 광역성을 띄고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수사 업무는 국가경찰이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입니다.

③ 향후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된 이후, 자치단체별 치안여건 및 재정여건, 성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치경찰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Q5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이나, 상호 업무 떠넘기기로 인해 주민들이 더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지?

A

- 명확한 사무범위 규정, 112종합상황실 합동근무, 관할 불문 초동조치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한 혼선 최소화
- 3단계에 걸친 시범 운영을 통한 추가 보완책 마련

잘못 알려진 내용

- 국가·자치경찰로 이원화되면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이나 떠넘기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치안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① 법령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상호 간 업무협약을 통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 ② 특히, 자치경찰이 도입되더라도 국민들은 현행과 같이 112로 범죄신고를 하면 되고, 국가-자치경찰 간 협업을 통해 신속 대응할 예정입니다.
 - 범죄 신고를 접수하는 국가경찰의 112종합상황실에 자치경찰도 합동 근무를 하도록 하여, 양측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 출동요구를 받은 경우 국가·자치경찰 소속을 불문하고 현장에 가장 가까운 경찰이 출동해 범인 검거 등 초동조치를 하도록 하여,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③ 또한,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시범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보조자료>

▶ 국가·자치경찰 공조우수사례

'19. 2. 15. 제주청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 신고를 접수, 112상황실의 출동 지시를 받은 국가-자치경찰이 공동으로 긴급배치하여, 20분만에 피의자 검거

Q 6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 공백이 발생하거나, 치안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A

- 국가-자치경찰이 이중으로 촘촘하게 치안 안전망 구축
-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분장을 통해 치안 효율성·전문성 제고

잘못 알려진 내용

-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현장 치안력이 약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①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1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찰이 이를 보완함으로써 치안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은 이중 삼중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아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 ②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적인 치안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경찰은 범죄수사 업무와 국가의 안위에 필요하거나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에 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며 동네의 골목길까지 꿰고 있는 자치경찰은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Q 7

지역 세력과 유착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는 없는지?

A

- 시도지사가 아닌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을 관리·감독
- 중앙 정부의 지도·감독,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등 법령에 따른 견제와 균형 장치 마련

잘못 알려진 내용

-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토호세력 등 지방권력과 유착하고 사병화(私兵化)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1 자치경찰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더라도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없고, 자치경찰의 수사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에도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추천·제청권 등을 통해 시도지사를 견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 2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1명, 시도의회 2명, 대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추천 등 총 5명의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정당 소속이 아닌 전문가·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고, 법률상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3 만약, 자치경찰과 지방권력 간 유착관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경찰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 또한, 국가의 지도·감독·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견제수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보 조 자 료>

▶ **종합설계도 및 시도경찰위원회 주요 내용**

종합설계도	시도경찰위 주요 내용
	<p>(위원) 5인*으로 구성, 시·도지사가 임명</p> <p>* 시·도지사 지명 1명, 시·도의회 추천 2명, 대법원 추천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p> <p>(결격사유) 정당 당적이탈·선출직 퇴직 3년 등</p> <p>(사무)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추천 등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자치경찰 조직·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결정</p>

▶ **국가의 지도·감독 등 규정(경찰법 개정안)**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도)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모두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조안·권고·지도하고 그 내용을 상호 통보
- (자치경찰사무 중 국가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모두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지도·감독하고 그 내용을 상호 통보
- (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모두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명령하고 그 내용을 상호 통보
- (감사) 지방자치법(§171, §171의2)*을 따르되,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 요구 가능(이 경우,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감사 요구)
 - * 지방자치법 §171 :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실시,
 - §171의2 : 감사원 감사실시 등에 대한 중복감사 제외, 부처 합동감사 실시
- (재의요구) 시·도의회 의결에 대해서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되,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의요구토록 요청 가능
 - * 시·도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요청은 ①행안부장관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요청 ②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행안부장관을 거쳐 요청

Q 8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닌지?

A

-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추진 목적과 가치가 달라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음
- 다만,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잘못 알려진 내용

- 비대화되는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자치경찰 시행이 선행되어야 수사권 조정이 가능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①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가치가 달라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상호 간 도입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체계에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국정 과제로서, 자치경찰이 어떤 수준으로 실시되든 검찰과 경찰(국가 및 자치경찰) 간 어떻게 수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 반면, 자치경찰제는 치안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조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② 다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9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치안불균형은 없는지?

A

- 인력·장비 등 소요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
- 시범운영 예산은 국비 지원,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검토중

잘못 알려진 내용

- 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①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국가경찰 4.3만명 및 관련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 시 관련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

- 우선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시기에 맞추어, 중앙-지자체 적정한 재원분담, 지자체간 치안서비스 불균형 방지, 국가-자치경찰간 처우 및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 ② 이를 통해 재정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보조자료>

▶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시행계획('19년) 中 재원확보 방안

- 재원 부담 기준 마련
 -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대한 소요재원은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원
- 재원 확보방안 추진
 - (지방세입 확충) 지방소비세 확대·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치단체 재원 확보 검토
 - (교부세 확충) 지방교부세법 개정,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검토

Q 10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A

- 광역 시도단위에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기초 시·군·구에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예정
-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 해당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법령에 명문화

잘못 알려진 내용

- 범정부안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운영 과정에서 기초단위 자치단체는 소외되어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① 범정부안은 각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시·군·구에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 지구대·파출소는 원칙적으로 기초 지자체에 설치되는 자치경찰대로 이관하여, 각 시·군·구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② 특히,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할 때 해당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자치경찰제 운영과정에서 기초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 ③ 또한, 자치경찰대장이 지방자치행정과 연계 등 필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장과 상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상시 의견 수렴을 제도화 할 예정입니다.
 - 현재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의견반영, 기초단위 유관기관 간 상호 협조 등을 위해 운영중인 기초단위의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 : 해당 기초자치단체장)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 기초 자치단체장, 기초 지방의회 의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구성

④ 다만, 현행 우리의 치안여건과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시도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광역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 향후, ① 범죄의 광역화 추세 ② 시·군·구의 재정 여건 ③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운영 시 비효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초 자치단체까지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조자료>

▶ 자치경찰대장 – 자치단체장 상시협의회 운영 규정(경찰법 개정안)

- (자치경찰의 운영)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상호 지원·협력 등을 통한 지방자치행정과 자치치안행정의 연계 및 공동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장과 상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지역치안협의회 규정(00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00시 000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능)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00시 000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0구청장 2. 00구의회 의장 3. 00경찰서장 4. 00교육지원청 교육장
5. 00소방서장 6. 00세무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